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제, 그러므로, Andrew M. Cuomo, 본인은 뉴욕주 주지사로서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의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2020년 7월 21일 화요일까지 다음 법 또는 그 일부를 정지 또는 일시적으로 수정합니다.

-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5조, 임시 및 최종 부동산세 평가 대장을 30일까지 늦게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허가 세금 평가 단위에 대한 평가 불만 사항 청취가 임시 대장 신고 후 21일 후에 있도록 허가, 임시 대장 신고 통지가 온라인에 게시될 수 있고 임시 대장의 대면 조사를 중단하도록 허가. 평가 심사 위원회(Boards of Assessment Review)가 원격으로 불만을 청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함.
- 부동산세법 § 1212, 조세재무부(Dept. of Tax and Finance) 커미셔너가 법률이 정한 마지막 날짜보다 늦어도 10일 전에 최종 주 균등화 비율, 등급 비율 및 등급 균등화 비율을 인증하도록 허가하기 위함.
- 교육법(Education Law) § 680, 면허가 있는 약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또는 항체 검사를 주문 및 시행하도록 허가하기 위함.
-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 571(6)은 면허가 있는 약사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로 지정되어 제한된 서비스 실험실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또는 항체를 검사하도록 지시하게 허가하기 위함.
- 10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401.3 (a), (e), 709, 710, 710.1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면허를 받은 출산병원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출산 전용 기관을 승인 및 인증하도록 허가하기 위함
- 2020년 9월 15일에 시행될 모든 빌리지 선거의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에 따라 선거법(Election Law) 제6 및 15조와 타운법(Town Law) 제6조는 임시 중단되거나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3월, 4월, 5월, 6월 실시 예정인 모든 빌리지 또는 타운 선거는 2020년 9월 15일로 변경됩니다. 2020년 9월 15일 실시 예정인 빌리지 또는 타운 선거에 대하여 본 행정명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정당 후보 선정은 해당 정당의 장이 결정한 방식대로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당 간부회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2020년 8월 20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하며 간부회의의 선정 인증 및 거부 또는 승인의 모든 인증은 2020년 8월 22일까지 보고되고, 이러한 거부 인증이 일단 제출되면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2020년 9월 이전으로 예정되었으나 현재 2020년 9월 15일에 실시될 빌리지 또는 타운 선거의 모든 독립적인 후보 선정은 향후 행정명령에 의해 결정될 뉴욕 일시 중단(NY on Pause)의 연장 기간동안 연기됩니다.
- 원래 2020년 3월, 4월, 5월, 6월로 예정되었고 본 행정명령에 의해 선거 시기가 결정될 모든 빌리지 또는 타운 선거는 이러한 사전 선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동일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투표용지가 이미 출력되었을 경우, 해당 투표용지는 원래 선거일이 표지되어 있지 않는 한 2020년 9월 15일 선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3월, 4월, 5월, 6월 선거 실시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선거법 및 빌리지법의 모든 조항은 2020년 9월 15일 선거일에 적용됩니다.
- 2020년 9월 15일 실시되도록 일정을 조정된 선거에서 선출된 빌리지 또는 타운 공직자는 선거법 15-126항에 따라 빌리지 서기가 기입한 캔버스 선언문이 작성 완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이러한 공직자의 임기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된 선거에서 선출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일자에 종료합니다.
- 행정명령에 따라 연기되었으며 이러한 연기의 시점에 투표 접근성이 완벽하지 않은 모든 타운 또는 빌리지 선거는 2020년 9월 15일 선거에 투표용지 접근성을 적용 가능할 경우에만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선거법 § 9-209, 유권자가 일정이 조정된 선거 또는 다른 투표용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유권자가 취소된 및 일정이 조정된 선거에 표를 제출하고 검표되도록 요청하여 제출한 부재자 투표용지를 허용하기 위함.
- 선거법 § 8-410,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개최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개인적으로 및 독립적으로 표시하려는 유권자가 접근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기 위함.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선거법 § 16-108, 대법원 법관(Justice of the Supreme Court)이 선거 당일 선거 문제를 듣고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허용하기 위함.
- 선거법 § 8-407,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관이 물리적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에 참석하거나 방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편 또는 개인 배달을 통해 보내도록 허용하기 위함.
- 선거법 § 5-204, 2020년 설문 조사 사이트에 지역 또는 직접 등록의 필요성을 제거하기 위함.
- 공중보건법 § 576-b (1) 및 10 뉴욕법 58-1.7, 58-1.9는 임상 실험실에서 요양원 및 성인 관리 시설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용 검체를 처방전이나 명령 없이 수락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해당 직원에게 검사를 보고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함. 또한 시설이 양성 결과를 치료 및 격리 명령을 위해 지방 보건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기 위함.
- 교육법 § 6530, 의사가 의사 환자 관계 없이 자가 수집을 위한 코로나19 검사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또한,** 재난 비상사태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도 발행할 수 있는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7월 21일 화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행합니다.

- 보건 커미셔너는 간호 시설 및 성인 관리 시설이 보건 커미셔너의 모든 규정 및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이러한 시설의 운영 면허를 중단 혹은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커미셔너가 미준수로 결정하는 경우 이와 반대되는 모든 법 규정과 관계 없이 커미셔너는 뉴욕주 주민들의 생명, 안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운영자에게 24시간 전 통지하여 운영을 계속할 리시버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6월 23일에 실시할 예정인 의회 및 주 상원 특별 선거는 취소되며, 해당 의석은 총선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퀸즈 자치구 대표를 결정하는 특별 선거는 취소되며, 해당 대표석은 총선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 37번 자치구 시의회 의석을 결정하는 특별 선거는 취소되며, 해당 대표석은 총선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 행정명령 202.13호 및 202.12호에 포함된 출산 환자에 대한 지원 담당자 관련 지침은 이로써 모든 28조 시설이 면허 유지의 조건으로써 모든 출산자와 다음 사람의 동석 허용을 요구하도록 개정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진통 및 출산 과정 및 환자의 입원 기간 동안 환자를 지원하는 자 및/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진통, 출산, 환자의 입원 기간 동안 환자를 지원할 조산사 등입니다. 지원자 및/또는 조산사는 커미셔너가 결정한 의료적 필요의 예외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행정명령 202.10호에 포함되어 보건 커미셔너가 모든 일반 병원, 외래 수술 센터, 사무실 기반 수술 관행 및 진단 및 치료 센터에 모든 선택적 수술 및 치료를 취소하는 등 환자를 수용할 병상의 수를 늘리도록 지시할 권한을 부여하는 지침은 이에 일반 병원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적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개정됩니다. 한 카운티 내에서 가능한 총 입원 환자 대응수가 30%를 넘고 대응 가능한 총 병원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ICU) 대응 가능 인원은 30% 이상이며 2020년 4월 17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코로나19 확진 입원 환자의 수가 열 명 미만인 경우, 카운티 내의 각 병원이 자격 조건을 만족하고 가능한 총 입원 환자 대응수가 30%를 넘고 대응 가능한 총 병원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ICU) 대응 가능 인원은 30% 이상이며 2020년 4월 17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코로나19 확진 입원 환자의 수가 열 명 미만인 경우. 보건 커미셔너는 이러한 기준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침을 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선택적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일반 병원은 최소한 수술 및 치료의 종류와 수를 커미셔너가 지정한 방법으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선택적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병원은 최소한 시설 가용량, 물리적 구성, 전염병 프로토콜 및 인력 배치 능력을 포함하는 계획을 보건 커미셔너가 지정한 방법으로 보건부에 제출하여 금지 조항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이러한 시설이 선택적 수술 또는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 해고 등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고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정보 또는 이러한 시설이 선택적 수술 또는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발생한 일시 해고 등 인력 감축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병원은 해당 환자가 승인된 진단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받기 전까지 모든 선택적 수술 또는 치료를 시행해서는 안 되며, 병원과 환자는 수술 및 치료를 시작하기 전 커미셔너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방, 도서관, 하수도, 상수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선거 및/또는 예산 투표를 실시하는 지역구 및 특수 지역구는 2020년 9월 15일로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선정 청원을 위한 서명의 수집은 이에 향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되며, 해당 일정은 향후 행정명령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단, 교육구가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도서관 지역구는 2020년 6월 9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법에 따라 회람 또는 제출되거나 선거법 6-138항에 따른 독립적인 선정 청원의 회람 또는 기타 특수 지역구 선거의 제품, 수집은 행정명령 202.13호에 따라 향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연기되며 그 시점은 향후 행정 명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20년 3월에 연기되었거나 2020년 6월 16일 또는 2020년 9월 15일 이전에 실시될 예정인 모든 빌리지 또는 타운 선거는 이에 2020년 9월 15일로 다시 일정이 조정됩니다.
- 행정명령 202.23호는 유효 및/또는 유효상태가 아니며 2020년 6월 23일 실시될 예비 또는 특수 선거에 투표할 자격을 갖춘 모든 유권자 중 6월 23일 특별 선거 또는 예비 선거 부재자 투표를 전화로 신청한 자가 무료 반송 봉투와 함께 부재자 투표용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단, 모든 유권자는 하나 이상의 투표용지를 수령해서는 안 되며 투표용지를 받기 전 또는 수령 시점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전화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용지에 대한 전화 요청 기록을 보관하고,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하는 유권자를 대신하여 부재자 투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는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 절차의 미비로 인해 무효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다른 주 또는 캐나다의 유효한 면허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현재 뉴욕주 면허 또는 등록을 가지지 않은 상태의 전문가의 활동을 승인하기 위한 행정명령 202호에 의해 중단된 모든 법률의 중단 및 개정 또는 이후 선포된 행정명령의 개정 및 변경은 이에 전문가들이 뉴욕주의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30일 동안 연장됩니다.
- 조세법(Tax Law) 제1145항에 의거하여 지연 신고 및 지불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조세 및 금융 커미셔너의 권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 분기별 판매세에 대해 2020년 3월 20일까지 환급 신청과 판매 및 이용세를 납부해야 했던 납세자에게 최대 100일까지 이자 및 벌금 면제 승인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 주 내 경마장의 면허권자 또는 가맹점은 2020년 6월 1일부터 그러한 경마장을 운영할 수 있으나, 단 그러한 경마장은 시설 내 방문객 또는 팬을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에 필수 인력만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마장의 그러한 면허권자 또는 가맹점, 모든 필수 인력은 보건부 및/또는 게임위원회(Gaming Commission)에서 발행한 지침 또는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21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